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 양성평등기본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양성평등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564

2020. 12. 18.(금)
정책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: 2020년 10월 30일

다. 회부일자 : 2020년 11월 3일

라. 상정일자 : 2020년 12월 8일

- 제38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 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박현순 여성가족정책관)

가. 제안사유

○ 「양성평등기본법」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기초자치단체 소관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을 60% 초과 위촉하여야 하는 경우 시·도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 근거 마련

○ 양성평등 실현,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탄력적이고, 안정성 있는

사업 지원을 위하여 양성평등기금 존속기한 연장

나. 주요내용

○ 양성평등위원회 기능 추가 (안 제7조)

- 충청북도 양성평등위원회에서 기초자치단체 소관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을 60% 초과하여 위촉해야 하는 ‘부득이한 사유’에 대한 인정 심의

○ 양성평등기금 존속기한 연장(안 제38조)

3. 검토보고 요지 (김주회 수석전문위원)

가. 제출배경

○ 본 개정안은 「양성평등기본법」 개정에 따라 충청북도 양성평등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하고,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에 따라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○ 안 제7조는, 시·군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되,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, 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직 위원 수의 비율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제2항에 따라,

- 충청북도 양성평등위원회의 기능에 “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·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사항”을 신설한 것임.

<양성평등기본법>

제21조(정책결정과정 참여)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(위원회, 심의회,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, 협의,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구성할 때 **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** 하여야 한다. **다만,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**. <개정 2020. 5. 19.>

1. 국가 및 시·도가 구성하는 위원회: 실무위원회
2. **시·군·구가 구성하는 위원회: 시·도위원회**

❍ 안 제38조는, 충청북도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기존 “2020. 12. 31.까지”에서 “2025년 12월31일까지”로 5년을 연장한 것임.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제4조제1항에는, 기금이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경우 및 「지방공기업법」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외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.
- 「양성평등기본법」제42조에서 지방양성평등기금의 설치를 의무가 아닌 필요에 따른 임의 설치로 규정하고 있음.
- 이에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, 충청북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(결정일: 9.11)를 거쳐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한 것임.

<양성평등기본법>

제42조(기금의 설치 등) ⑤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**지방양성평등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,** 이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<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>

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**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기금과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**

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, **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**

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다. 종합의견

○ 본 개정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것이며, 양성평등기금 또한 충청북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고, 존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바 타당하다고 판단됨.

<참고자료>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금 현황

□ 개 요

○ 설치근거 : 충청북도 양성평등기본조례 제31조

○ 목　　적 :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지원

○ 재　　원 : 도 출연금, 이자수입 등

□ 연도별 지원 현황

(단위: 천원)

연 도	예 산 액	단 체 수	지 원 액	비 고
2016년	66,506	11	61,565	단체별(2,000~10,200)
2017년	55,000	13	54,624	단체별(2,000~7,000)
2018년	60,000	14	54,401	단체별(1,770~8,160)
2019년	50,000	13	49,719	단체별(1,060~9,460)
2020년	67,823	9	67,823	단체별(1,490~30,000)

※ 2020년 코로나19로 인하여 추진단체의 사업포기(7개 사업)

□ 연도별 조성 현황

(단위: 천원)

구분	수입내역(A)				지출내역(B)		잔액 (C=A-B)	연도말 조성규모
	계	전입금	이자 수입	기타 수입	계	사업비		
'16	68,307	-	65,319	2,988	62,365	62,365	5,942	6,408,815
'17	359,108	300,000	52,308	6,800	55,224	55,224	303,884	6,712,699
'18	42,463	-	41,460	1,003	55,001	55,001	△12,538	6,700,161
'19	86,207	-	84,987	1,220	50,319	50,319	35,888	6,736,049
'20	114,214	-	112.987	1,227	68,423	68,423	45,791	6,781,840

□ 사업별 내역 < '20년도 집행액>

단 체 명	사 업 명	집행액(천원)	비고
추진 내역	**9개 사업**	**67,822.2**	
충북여성재단	여성친화도시 확산사업	**30,000**	
	양성평등기금 사업 모니터링	**5,000**	
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	충북의 미래, 청년.대학생의 지방의회 모니터링 '충북도의회의 양성평등 민감도는?'	**4,996.2**	
충북여성살림연대	마을카페에서 만나는 여성주의	**7,720**	
대한어머니회 충북연합회	함께 웃는 행복한 세상! 평등을 일상으로	**3,590**	
소비자교육중앙회 충청북도지부	인권평등, 평등사회구현을 위한 여성의 역할교육 및 캠페인	**5,700**	
청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	천연 아로마테라피로 '잃어버린 나'를 찾는다	**3,811**	
청주성폭력상담소	양성평등을 향해 저출산을 향해 GO! GO!	**1,490**	
충북여성장애인연대	우리집이 달라졌어요2 (여성장애인 가사정리 서비스)	**5,515**	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"생략"

5. 토 론 요 지 : "생략"

6. 심 사 결 과 : "원안가결"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"없음"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"없음"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○「충청북도양성평등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충청북도양성평등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564

제출연월일 : 2020년 10월 30일
제 출 자 : 충 청 북 도 지 사

1. 제안사유

○ 「양성평등기본법」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기초자치단체 소관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을 60% 초과 위촉하여야 하는 경우 시·도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 근거 마련

○ 양성평등 실현,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탄력적이고, 안정성 있는 사업 지원을 위하여 양성평등기금 존속기한 연장

2. 주요내용

○ 양성평등위원회 기능 추가 (안 제7조)

- 충청북도 양성평등위원회에서 기초자치단체 소관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을 60% 초과하여 위촉해야 하는 ‘부득이한 사유’에 대한 인정 심의

○ 양성평등기금 존속기한 연장(안 제38조)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6.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양성평등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양성평등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 중 “다음”을 “법 제11조의2에 따라 다음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를 제6호로 하며,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·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사항

제38조 중 “2020년 12월 31일”을 “2025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)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양성평등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	제7조(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) 법 제1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----------.
1. ~ 4. (생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5.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·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사항
5. 그 밖에 양성평등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	6. 그 밖에 양성평등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제38조(기금의 존속기한)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.	제38조(기금의 존속기한)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.

관련법령 발췌

□ 양성평등기본법

제11조의 2(시·도 양성평등위원회) 특별시 · 광역시 · 특별자치시 · 도 · 특별자치도(이하 "시 · 도"라 한다)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· 도의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· 조정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(이하 "시 · 도위원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 다만, 시 · 도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시 · 도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거나 시 · 도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.[본조신설 2020.5.19.]

제21조(정책결정과정 참여)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(위원회, 심의회,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, 협의,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개정 2020.5.19.>

1. 국가 및 시 · 도가 구성하는 위원회: 실무위원회
2. 시 · 군 · 구가 구성하는 위원회: 시 · 도위원회

제42조(기금의 설치) ①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성평등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
⑤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양성평등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, 이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기금과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,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·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